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방조·횡령·폭행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8. 23. 2017고단1882, 2017고단2583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지혜, 오진희(기소), 이수진, 김한준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명수미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, 피고인 2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,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횡령의 점은 각 무죄.

이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